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8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윤재옥 · 이달희 · 서천호
주호영 · 이인선 · 백종현
김기웅 · 김선교 · 김태호
서범수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

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가 편중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예방진단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진단·평가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장소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범죄예방에 관한 여러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 지

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경찰력 증원하고 순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진단 실시와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통해 범죄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경찰청장은 건축물·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조할 수 있음(안 제17조).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진단”이란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진단·평가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장소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① 범죄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이하 “중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중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범죄예방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범죄예방진단 또는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외 범죄예방, 치안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중앙협의체의 구성 및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범죄예방진단)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 구역 내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범죄예방진단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휘·감독을 거치지 않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사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범죄예방진단 실시의 절차 및 방법, 범죄예방진단결과의 작성,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휘·감독을 거치지 않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소속 경찰관을 증원·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정보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범죄통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범죄예방정보”라 한다)를 수집·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이하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범죄예방 방안을 연구·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정보를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정보의 수집·작성·관리·공개 및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한 범죄예방정보 또는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3조(범죄 예보·경보) ①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통해 범죄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 예보·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범죄 예보·경보의 실시 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건축물·시설 및 공간 등

에 대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대상 시설 등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⑤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 및 공간 등이 아닌 것에 범죄예방디자인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의 연장, 인증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 및 청문)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 및 공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 등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건축물·시설 및 공간 등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받은 자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